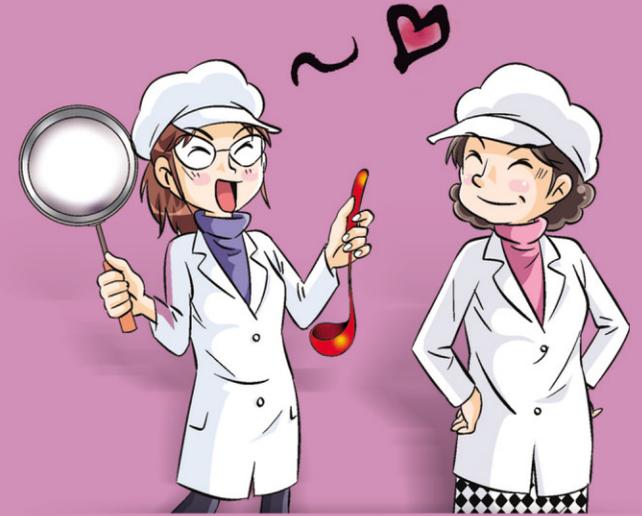


안전보건공단 전국 연락처

기관명	주 소	전화번호
서울지역본부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 74 유한양행빌딩 14, 15층	02-828-1662
서울북부지도원	서울특별시 중구 칠패로 42(봉래동1가10번지) 우리빌딩 7, 8층	02-3783-8351
강원지도원	강원도 춘천시 경춘로 2370(온의동) 한국교직원공제회관 2층	033-815-1056
경인지역본부	인천광역시 서구 한빛로 15(가정동 491)	032-570-7261
경기남부지도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권광로 511(이의동)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13층	031-259-7264
경기북부지도원	경기도 의정부시 추동로 140(신곡동) 경기북부상공회의소 1층	031-828-1951
경기서부지도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 230(고잔동) 센트럴시티 2층	031-481-7542
경기동부지도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쇠골로 17번길 3 소곡화관 2층	031-785-3356
부천지도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 265번길19(상3동 538-3) 대신프라자 3층	032-680-6520
부산지역본부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763번지 26(부곡동 64-31)	051-520-0594
경남지도원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59(용호동 7-3)	055-269-0520
경남동부지도원	경남 양산시 동면 남양산 2길 51(석산리 1440-1) 양산노동합동청사 4층	055-371-7512
울산지도원	울산광역시 남구 돌산로 146(달동 615-8) 국민은행빌딩 2, 4층	052-226-0564
대구지역본부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648 호수빌딩 19, 20층	053-609-0563
경북동부지도원	경북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402(대도동 124-4번지)	054-271-2024
경북북부지도원	경북 구미시 3공단 1로 312-23(임수동)	054-478-8064
광주지역본부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무진대로 282 무역화관 8, 9, 11층	062-949-8784
전남동부지도원	전남 여수시 무선중앙로 35	061-689-4911
전북지도원	전북 전주시 덕진구 건산로 251(인후동 1가 807-8) 고용노동부 종합청사 4층	063-240-6563
제주지도원	제주 연삼로 473(이도2동 390) 중소기업지원센터 4층	064-797-7526
대전지역본부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339번길 60(문지동)	042-620-5634
충남지도원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불당동 492-3)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3층	041-570-3411
충북지도원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로 161번길 20(가경동) KT 3층	043-230-7116
본부 서비스업재해예방실	인천광역시 부평구 무네미로 478(구산동 34-4)	032-510-0647



급식시설

급식시설 사고사례 만화집

일하는 사람들의
생명 and 건강을 지켜주는
산업재해예방
중심·전문기관 입니다.

안전보건공단은 일하는 사람들의
생명 and 건강 보호를 통해 안전한 일터,
튼튼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산업재해예방 중심·전문기관입니다.



마음으로 전하는 안전보건 서비스 **서비스업 안전** ^{+(터하기) 사업}

안전터하기
사업 소개

안전^{+(터하기)} 란

서비스업 사업장과 생활주변에 안전을 더 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자는 의미

사업내용

서비스업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고 사례를 전파하고
재해예방OPL(One Point
Lesson), 스티커 등과 같
은 콘텐츠를 전달해 주는 자
원봉사 서비스입니다.

- ▶ 2012년 30만 개의 서비스업 사업장을
500명의 안전지킴이 요원들이 찾아
갑니다.
- ▶ 동 사업은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
공단이 함께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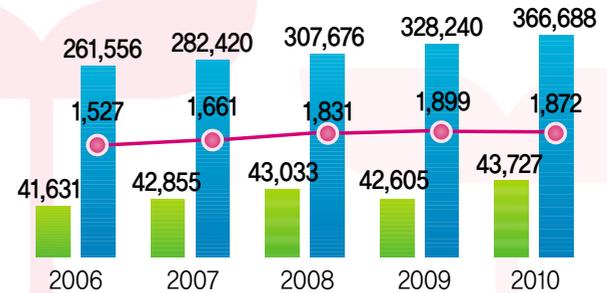
「안전보건공단」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약칭입니다.

당신의 안전이
가족의 행복입니다

산업재해에 따른 손실액



최근 5년간(2006년~2010년) 사고자 수 매년 70여명씩 지속증가
- 사업장, 근로자 수 대비 재해자 수 -



■ 사업장 수
■ 근로자 수
■ 재해자 수

- 사업장 수 연평균 400여개소 증가
- 근로자 수 연평균 21,000여명 증가



급식시설 조리원의 24시간



베임 오이를 썰다 방심하여 손가락 베임

병원 조리실에서 반찬재료인 오이를 시간에 쫓겨 급하게 썰다가 실수로 왼쪽 손가락 끝을 칼에 베임

08: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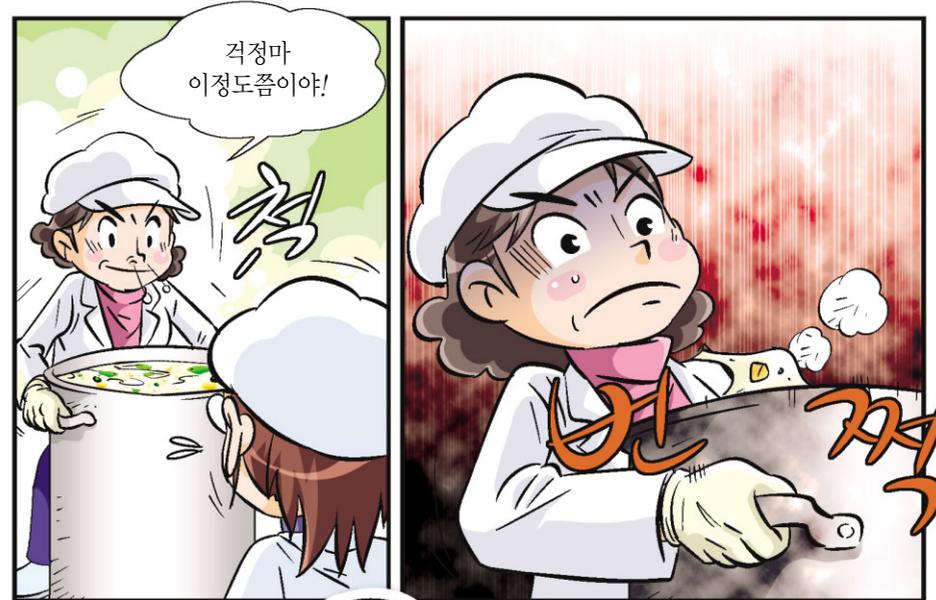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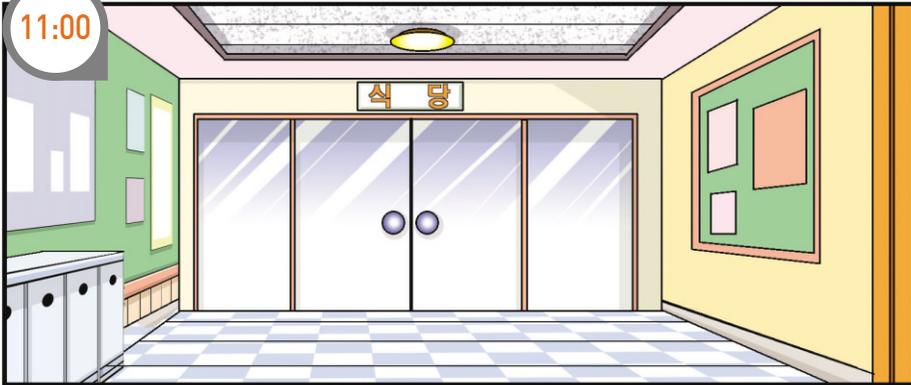
사고예방 대책

- ▶ 칼 사용 시 잡담을 삼가고 칼 끝을 보고 집중하여 작업
- ▶ 재료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확실히 잡고 칼 사용
- ▶ 베임방지용 장갑 착용

근골격계질환 국수를 들어올리다 허리 부상

조리실에서 직원 점심식사를 준비하던 중 다른 조리원들이 바빠서 혼자 국수를 들어올리는 순간 허리에 심한 통증과 함께 부상 당함

11:00





- 사고예방 대책**
- ▶ 이동대차를 사용 운반
 - ▶ 무게중심을 낮추고 몸에 밀착하여 들기
 - ▶ 2인 1조 작업



화상 뜨거운 국물이 팔에 쏟아져 화상

조리실에서 뜨거운 국을 배식대로 옮기다가 음식찌거기를 밟아서 미끄러져 국물이 팔에 쏟아져 화상을 입음





- 사고예방 대책**
- ▶ 바닥은 항상 건조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
 - ▶ 조리실 내에서는 미끄럼방지 장화 착용
 - ▶ 용기에서 내용물이 넘치지 않도록 나누어 운반



중대재해 사례

2000년 0월 전북소재 00병원 조리실에서 그릇을 운반하던 중 미끄러운 바닥에서 넘어져 끓는 물이 담긴 수저 세척용기 안으로 빠져 열탕화상을 당하여 병원에서 치료 중 패혈성 쇼크로 사망



재해예방 대책

- ▶ 조리실 바닥 청결 상태 유지
- ▶ 작업장 바닥의 뜨거운 용기 등은 정리하여 안전통로 확보
- ▶ 조리실내 미끄럼주의 경고표지판 부착

중대재해 사례

2000년 0월 0일 구내식당 조리실에서 발을 헛디뎈 미끄러지면서 머리를 벽에 부딪혔으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그 후 계속 두통과 콧물이 심해져서 00병원에 입원 치료 중 사망



재해예방 대책

- ▶ 조리실 바닥은 항상 건조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
- ▶ 미끄럼방지 장화 등의 개인보호구 착용
- ▶ 조리실내 미끄럼주의 경고표지판 부착

가장 기본적인 것만 지키다면 재해란 없을 것

태릉고등학교

매일 점심시간 1천 4백 명이 먹는 음식을 책임지고, 저녁에도 2백 명 분의 음식을 만든다. 태릉고등학교의 영양을 책임지고 있는 이연주 영양사를 필두로 총 17명이 매일 겪는 일이다.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매일매일이 긴장의 연속이지요.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철저히 지켜나가려고 노력합니다. 면 장갑을 끼고, 그 위에 고무 장갑을 다시 끼게 합니다. 그리고 앞치마는 고무로 된 방수 앞치마를 사용하고 종아리까지 오는 장화를 신고 일을 합니다.” 경력 7년의 이연주 영양사는 급식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책임지고 있다. 그래서 더욱 꼼꼼히 살피고 철저하게 관리하려는 노력을 꾸준히 해 나가고 있다.

아침에 안전보건공단의 스트레칭 포스터를 보며 가벼운 스트레칭을 시작한 후 식재료가 들어오는 과정에서는 무거운 것은 둘이서 들게 한다. 조리실에서는 항상 바닥을 미끄럽지 않게 유지하고 튀김 등을 만들 경우 바닥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유의하는 한편 만약 기름이 바닥에 묻을 경우 바로 청소하도록 했다. 또 서로 업무

분담을 철저히 해 오고 가면서 서로 부딪히는 일이 없게 하고, 미끄럼방지 장화를 신고 일하고, 장화가 닳았을 경우에는 바로 교환하여 신고했다.

조리실에서 야채나 고기를 자를 때 사용하는 절단기는 대부분 경력자만 다루게 하지만 그들에게도 충분히 안전사항을 숙지케 한 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면 고무장갑의 경우 손보다 크기 때문에 자칫 자신도 모르게 빨려 들어갈 수 있으므로 고무장갑을 벗고 일을 하며 또 튀김요리나 뜨거운 국을 만들 때에는 항상 보호 장갑을 착용하고 음식이 튀어 화상을 입지 않도록 적정량을 조리하도록 하는 한편 스팀솔이나 튀김솔 작업 중에는 반드시 안전핀을 끼우고 사용하고, 조리 후 뚜껑을 열 때 갑자기 뜨거운 김이 올라와 화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얼굴을 돌리고 열도록 하고 있다. 모든 조리가 끝난 후 2, 3층에 위치한 식당으로 음식을 나를 때 사용하는 덤웨이트, 즉 음식물승강기도 적재 용량을 넘지 않게 음식을 싣고, 승강기 안으로 몸을 깊숙이 넣지 않도록 주의를 주고 있다.

기본적인 안전을 습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이연주 영양사 다른 직원들과 항상 이야기를 나누며 하나하나 체크해 나가는 모습이 태릉고등학교의 급식과 안전을 책임지는 귀감이 되고 있다.

글· 신종섭 기자 / 일러스트 유재영 작가





1 | 산업재해발생 기록 보고 등 (제10조) |

- ① 산업재해(사망자,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 보존
 - ② 제1항에 따라 기록한 재해는 그 발생 개요, 원인 및 재발 방지계획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미이행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시행규칙 제4조의 2 [산업재해 기록 등]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3. 재해발생의 원인 및 과정
2. 재해발생의 일시 및 장소	4. 재해재발 방지계획

2 | 법령 요지의 게시 등 (제11조) |

이 법과 이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를 상시 각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로 하여금 알게 하여야 한다.

※ 미이행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 안전·보건 표지 부착 등 (제12조) |

사업장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의 조치에 대한 안내, 그 밖에 안전의식의 고취를 위하여 안전·보건 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 미이행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 안전조치 (제23조) |

사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 미이행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5 | 보건조치 (제24조) |

사업을 할 때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흙, 미스트, 산소결핍, 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2. 방사선, 유해광선, 고온, 저온, 초음파, 소음, 진동, 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 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4. 계측감시,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6. 환기, 채광, 조명, 보온, 방습, 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며 발생하는 건강장해

※ 미이행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6 | 근로자의 준수사항 (제25조) |

근로자는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사업주가 한 조치사항을 지켜야 한다.

※ 미이행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7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비치 (제41조) |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製劑)를 제조·수입·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려면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취급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 미이행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 |
|----------------------|-------------------------|
| 1. 화학물질의 명칭·성분 및 함유량 | 3.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
| 2. 안전·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 4.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8 | 작업환경측정 (제42조) |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은 작업환경측정을 하여야 한다.

※ 미이행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9 | 건강진단 (제43조) |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건강진단을 하는 기관에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

※ 미이행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시행규칙 제99조 [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등]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 사무실에서 서무, 인사, 경리, 판매, 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10 | 질병자의 근로금지·제한 (제45조) |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자에게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 미이행 시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위 법령은 고용노동부·검찰 합동점검 시 급식시설의 주요 위반사항을 요약한 것으로 사업주는 [영 별표 1]에서 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전체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당신의 허리 짚~옥 펴주세요~

나의 안전 - 체크리스트

- ▶ 조리실 내에 충분한 작업공간 및 통로를 확보하고 있는가?
- ▶ 바닥의 물기, 음식 잔재물, 물호스 등의 넘어짐 사고원인은 바로 제거하는가?
- ▶ 위험하거나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점에는 경고표지판을 부착하는가?
- ▶ 냉장고의 정리정돈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가?
- ▶ 뜨거운 물체와 화염과의 접촉을 방지하도록 작업구역이 구분되어 있는가?
- ▶ 뜨거운 물체를 다루기 전에 긴 장갑, 긴 앞치마를 착용하는가?
- ▶ 가스의 사용안전 수칙을 숙지하고 생활화하고 있는가?
- ▶ 냉동 식자재는 미리 해동시킨 후 작업하는가?
- ▶ 세척제 사용 시 적절한 보호구(고무장갑 등)를 착용하는가?
- ▶ 칼 등 날카로운 도구를 이용한 작업 시 작업안전 수칙을 준수하는가?
- ▶ 야채절단기 등 주방기기 청소 시 전원을 차단하고 청소하는가?
- ▶ 쌀포대 등 무거운 식자재 운반 시 이동식 대차 등의 보조기구를 이용하는가?
- ▶ 중량물 취급 시 2인 1조로 작업하는가?
- ▶ 작업 전·중·후 주기적으로 스트레칭을 하는가?

■ 나의 건강을 지키는 스트레칭

목운동



양손을 깎지 껴 아래로 지긋이 누른다



엄지손가락을 턱에 대고 위로 천천히 민다



머리에 손을 얹은 후 옆으로 천천히 당긴다

어깨운동



양쪽 어깨를 위로 지긋이 올렸다가 내린다



천천히 원을 그리며 어깨 관절을 돌린다



팔꿈치를 몸 쪽으로 천천히 당긴다

팔목운동



손가락을 깎지 끼고 손과 손목을 돌린다



다섯 손가락을 짝 폼다 구부렸다를 반복한다



한쪽 손은 뒤로 젖히고 몸쪽으로 천천히 당긴다

허리운동



양손을 깎지 끼고 머리 위로 천천히 뻗는다



등 뒤로 깎지 끼고 팔을 위로 올린다



다리를 꼬고 앉아 허리를 비튼다

